

퇴직연금일시금(퇴역연금일시금) 또는 퇴직일시금 퇴직수당(퇴직급여가산금) 산출의뢰서			
보 상 대 상 자	①소 속		직 급 (계 급)
	②성 명 (한 자)	()	주민등록번호
	③주 소	□□□-□□□	연락처(전화번호)
			() -
	④사실상 공무원으로 의 근무사항	유 형	☐ 임용결격 ☐ 당연퇴직 총 근무기간 근무기간
사실상 근무기간		년 월	(~)
			(~)
			(~)
⑤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종료 당시 직급(계급)·호봉	직급(계급) : 호 봉 :		
공 무 원 연 금 관 리 공 단 또 는 국 방 부 기 재	⑥사실상 근무종료 당시 연금법상 보 수월액	원	
	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(퇴역)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(퇴직급여가산금)		
	⑦퇴직(퇴역)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 (원)	⑧퇴직수당(퇴직급여가산금) (원)	⑨합 계(⑦+⑧) (원)
	사실상 근무기간중 납부한 기여금의 원리금반환액(합산금 반환액은 제외)		
	⑩기 여 금 의 원 금 (원)	⑪이자액(영 제3조제2항에 의한 기여금에 대한 반환이자) (원)	⑫합 계(⑩+⑪) (원)
위 보상대상자에 대하여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 법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년 월 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인			
불임 : 1.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2. 인사발령통지문 사본 1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또는 국방부장관 귀하			
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또는 국방부장관 인 (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) 귀하			

210mm×297mm

(보존용지(2종) 70g/m²)

작성요령

1. ①란의 소속은 보상대상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를 종료한 당시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의 기관명을 기재합니다.
예) 정부(제1)장관실인 경우에는 정부(제1)장관실
2. ④란은 보상대상자가 임용결격공무원인 경우는 “임용결격”에, 당연퇴직공무원인 경우는 “당연퇴직” 사항 해당란에 “V”표를 하고, 사실상 근무기간은 「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4호의 사실상 근무기간을 총 근무기간란에 기재하되, 「공무원연금법」의 재직기간 또는 「군인연금법」의 복무기간 산출방법에 의하며, 근무기간란에는 임용후 사실상 근무기간과 「공무원연금법」 또는 「군인연금법」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으로 합산·통산 및 산입된 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합니다.
3. ⑤란은 보상대상자가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으로서 근무를 종료한 당시의 직급 또는 계급 및 호봉을 기재합니다.
4. ⑥란은 보상대상자가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으로서 근무를 종료한 당시의 「공무원연금법」 또는 「군인연금법」에 따른 보수월액을 기재합니다.
5. ⑦·⑧란은 보상대상자의 사실상 근무기간을 「공무원연금법」의 재직기간 또는 「군인연금법」의 복무기간으로 하여 퇴직연금일시금·퇴역연금일시금(군인에 해당) 또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또는 퇴직급여가산금을 산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.
6. ⑩란은 보상대상자가 사실상 근무기간 중 「공무원연금법」 또는 「군인연금법」에 따라 납부한 기여금의 원금을 기재합니다.
7. ⑪란은 보상대상자가 사실상 근무기간 중 납부한 기여금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(사실상 군인으로 근무한 경우는 「군인연금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반환이자율)을 고려하여 산정한 이자를 기재합니다.